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76
----------	-----

2022년 12월 20일  
환경수자원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년 10월 17일, 문성호 의원  
나. 회부일자 : 2022년 10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31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문성호 의원]

### 가. 제안이유

- ‘서울로 7017’ 운영방식이 시직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위탁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서울로 7017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종료됨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1) 사무위탁 근거 조항 삭제(안 제3조)
- 2) 서울로 7017 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안 제16조 ~ 제20조, 부칙 제2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 피재황]

###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로 7017’ 운영방식이 시직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위탁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서울로 7017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종료됨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2017년 5월 20일 개장한 ‘서울로 7017’은 노후된 고가도로의 구조를 보강하고 시설을 보완하여 보행자 중심의 고가보행로를 조성한 것으로 개장 이후 푸른도시여가국 서울로운영단에서 직영관리로 운영하였음.

이후 2018년 8월 조직개편을 통해 서울로운영단이 해체되고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에서 직영관리하였으며, 2019년 10월 민간위탁<sup>1)</sup>을 통해 직영과 민간위탁이 혼합된 방식<sup>2)</sup>으로 운영되었고, 민간위탁 수탁기관은 프로그램 및 편의시설 운영관리와 시설·녹지관리를 수행하였음.

- 2022년 1월부터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sup>3)</sup> 중에 있으며, 직영 전환 이후 운영현황을 보면 예산 10억 7천5백만을 절감하고 인력 23명을 감축하여 민간위탁에 비해 운영 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sup>4)</sup> (붙임1 참조)
- 따라서 시직영 운영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조례의 사무위탁 근거 조항(제5조)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이견은 없음.

1) 민간위탁 기간: 2019. 10. 28. ~ 2021. 12. 31.

2) 직영(서울로지원팀): 보안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관리·감독, 경영·기술지원 등  
민간위탁(서울로걸다): 프로그램 및 편의시설 기획·운영, 녹지·시설·안전관리 등

3) 직영관리: 중부공원여가센터 서울로관리사무소

4) 서울로 7017 안전난간 재정비(2023년) 사업예산은 별도로 편성하여 제외함(2,883백만원).

- 서울로는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의 방향 정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서울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민관위탁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로 7017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였음.

조례 제정 당시 부칙에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년으로 규정<sup>5)</sup>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운영위원회를 총 4회 개최한 바 있음.<sup>6)</sup> 그러나 2019년 위원 임기의 존속기한이 경과되고 기능이 종료됨에 따라, 현 상황에서 동 조례에 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 또한 없는바, 관련 조항(제16조~제20조)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이견은 없음.

- 다만, 직영에서 위탁으로, 위탁에서 직영으로 운영방식이 바뀔 때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5)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6) 운영위원회 개최: 제1회(2017.9.4.), 제2회(2018.1.30.), 제3회(2018.11.21.), 제4회(2019.5.30.)

[붙임1]

〈서울로 운영관리(민간위탁 및 직영) 예산현황(인건비 포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서울로 7017 운영관리		
		2021년(직영+위탁)	2022년 직영	증감액(증감률)
합 계		4,495	3,420	△1,075 (△23.9%)
행정국 편성	인건비 (공무직)	300	480	△664 (△19.6%)
재무국 편성	인건비 (공무원)	450	707	
푸른도시 여가국 편성	인건비	2,632	1,532	△11 (3.1%)
	운영비	360	371	
	사업비	753	-	△753 (△100%)
	시설비	-	330	330 (100%)

〈직영전환에 따른 인력조정 현황(2022년 12월 기준)〉

(단위 : 명)

민간위탁+직영(총 77명)		직영(총 54명)		증감
구분	인원	구분	인원	
소계	41	소계	36	△23
정규직	23 (4팀)	공무원 (일반직)	5 (1팀)	△20
기간제	18	-	-	△2
-	-	공무직	-	5
-	-	서울로보안관 (공무직 7, 축타직 21, 기간제 3)	31	△6
		직영	인원	
		계	54	
		공무원 (일반직 8)	8 (2팀)	
		기간제(녹지관리)	16	
		공무직 (환경정비3, 시설정비2)	5	
		서울로보안관 (공무직 6, 축타직 18, 기간제 1)	25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부터 제15조를 제5조부터 제14조로 한다.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삭제하고, 제21조부터 제23조를 제15조  
부터 제17조로 한다.

조례 제6548호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서울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영사무의 일부를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u></p>	<p><u>&lt;삭 제&gt;</u></p>
<p><u>제6조 ~ 제15조 (생략)</u></p>	<p><u>제5조 ~ 제14조 (현행 제6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u></p>
<p><u>제16조(서울로 7017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서울로의 유지 관리 및 이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로 7017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서울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의 방향 정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u></li> <li><u>2. 서울로에 설치된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u></li> <li><u>3. 서울로 주요 사업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u></li> <li><u>4. 서울로 이용 활성화를 위한</u></li> </ol>	<p><u>&lt;삭 제&gt;</u></p>



프로그램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푸른도시여가국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삭 제>

2. 안전, 경영, 문화, 디자인, 도시계획, 조경분야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 근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역 일대에 주소, 사업장을 두고 있는 주민 및 상공인 등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서울로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제1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  
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  
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  
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0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  
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  
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  
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  
칙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  
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 제23조 (생략)

<삭 제>

<삭 제>

제15조 ~ 제17조 (현행 제21조부  
터 제23조까지와 같음)